



#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좌장**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前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토론**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박태선 (김근태재단 아카이브팀장)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문의** 강성국 활동가 (02-2039-8361, cfoi@opengirok.or.kr)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후원** (재)바보의나눔

◆ 인사말

박 주 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에 따른 국회의원의 활동은 공공의 활동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기록의 생산과 공개

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발언, 의결, 예산심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의  
모금과 집행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록  
되고 상당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실)과  
국가기관 사이에 서면질의나 자료요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자료의 경우는 기관별로 답변 방식의 차이가 존재해 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  
회 및 국회의원실에서 생산·접수되는 의정활동과 기록에 대  
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제도의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의 필요성  
과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연구

서 복 경



# 목차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기존연구 검토 .....	7
3. 국회의원 기록 관련 해외사례: 미국의회 .....	10
4.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준과 범위 .....	13
5.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 관련 제도 현황 .....	17
6.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 현황 .....	19
7.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관련 제도 현황 .....	29
8.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관리 현황 .....	31
9.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 방안 .....	36
참고문헌 .....	42
부록 .....	43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1) 연구목적

○ 과업지시서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기록이 임기 종료 이후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 공공기록물로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의 기준과,
-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 국회의원(실)-국회 기록물관리기관 사이에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현재 국회의원(실)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제도와 현황을 확인하고,
-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수집·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파악하며,
- 기록보존이 어려운 원인을 진단하여, 이를 개선할 제도적 대안과 구체화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본 연구는, 국회의원 임기 중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는 의정활동 정보 현황을 파악하고 임기 종료 후 공공기록물로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 최근 해외 의회의 의원 정보 수집 및 관리가 웹 기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고,
- 우리나라 국회도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온 국회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작업이 몇 단계의 진전을 거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 정보공개 규범의 진전과 함께 국회의원의 활동 중 상당 부분도 국회가 보유한 다양한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고 있고,
- 이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실)에서 생산·접수되는 정보의 상당수 역시 온라인을 통해 공표되거나 집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온라인을 통한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임.

## 2) 접근방법

-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 국회의원의 임기 중 생산·접수되는 정보를 수집 여부와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고,
  - 이를 임기 종료 후 수집 여부와 공개 여부와 교차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한 다음,
  - 각 범주에 해당하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제도를 파악하고,
  - 수집 및 공개 현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접근법을 택하였음.

<표 1>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현황 분석틀

		임기 중		
		수집_공개	수집_비공개	비(非)수집
임기 종료 후	수집_공개	I	II	III
	수집_비공개	-	IV	V
	비수집_소실	VI	-	VII

○ 현재 국회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와 연계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혹은 정보 시스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정보는 <표 1>의 I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주 II와 IV에 해당하는 정보는, 임기 중 수집되고는 있으나 제도적 근거에 따라 비공개처리 되었다가, 임기종료 후 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정보 분류절차를 거친 다음 공개 여부, 경과기관 등이 결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임.

- 예컨대,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행정부처와 1:1로 주고받은 질의서 및 답변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범주 VI에 해당하는 정보는, 임기 중 수집되고 공개되었으나 임기종료 후 기록관리기관으로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소실되는 정보를 의미함.

- 예컨대, 국회 홈페이지에서 원 구성이 되면 개설되었다가 임기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각 위원회별 홈페이지 탑재 정보 중 일부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 범주 III과 V에 해당하는 정보는, 임기 중 정보공개 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았지만 임기 중 기록관리기관의 노력으로 수집되었거나, 임기 종료 후 국회의원(실), 국회사무처 등에서 이관한 정보 중 일련의 처리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정보임.

○ 범주 VII에 해당하는 정보는, 임기 중에도 수집되지 않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수집되지 않아 소실되는 정보로, 대표적인 예는 국회의원 개인이나 국회의원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 탑재된 정보임.

###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다음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2000년 이후 관련 연구논문 검토

-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국회의원 기록물 관리 관련 학술논문, 학위논문

○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법규 연혁 분석

-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국회 규칙  
- 국회의원 외교활동, 국정감독활동, 입법 및 정책활동 관련 규칙·규정·내규

○ 공공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법규 연혁 분석

- 1999년 이후 ‘공공기록물법’ 및 ‘정보공개법’  
- 국회 및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규칙, 규정, 내규

○ 온라인 공개 및 집적 정보 분석

- 국회 홈페이지 연계 전자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제공 정보  
-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국회입법통합지원시스템(인트라넷) 탑재 정보

○ 정보공개청구



- 국회기록물관리기본계획
  -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의정활동(NA500001), 의원실운영(ZZ100008) 세부목록
  -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현황 및 업무내용
  - 2023년 국가기록보존소 업무계획
- 국회의원 정보 관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파악을 위한 인터뷰
-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자: 국회의원실 생산·접수 정보 관리 현황 파악
  - 국회기록보존업무 경력자: 국회기록보존업무 현황 파악
  - 국회의원 지원기관 지원업무 경력자: 국회의원(실)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간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파악

## 2. 기존연구 검토

-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 헌법기관으로는 「국회기록물 관리규칙」이 2001년 가장 먼저 제정되었으며,
  -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2005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이 제정되었고,
  -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 우리나라 헌법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는 제도화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정의되어 있음.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이러한 포괄적 정의를 ‘국회기록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국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과, 다른 한편으로 국회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법을 갖추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음.

○ 국회가 '생산·접수'하는 정보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생산·접수'하는 정보와 선출된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실)이 '생산·접수'하는 정보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국회 소속기관이 '생산·접수'하는 정보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절차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이른 시간 내 기록관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 본 연구의 대상인 국회의원(실)이 '생산·접수'하는 정보는 별도의 법률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탐색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 초기연구로 한은정(2008)은,

-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A)가 1986년 수행했던 의회 문서 라운드 테이블(Congressional Papers Roundtable; CPR)의 연구 성과 등을 토대로,
- 법률안의 제·개정, 예산심의, 결산심의, 청원·진정처리 등으로 국회의원의 업무분류표를 작성한 다음(61, <표 13>), 각각의 업무에 따른 기록분류표(70, <표 17>)를 만들어, 국회의원 기록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였음.

○ 한은정의 연구(2008)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 공적 업무를 기준으로 기록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했다면, 황길례(2010)는

- 앨버트 고어 연구센터,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국회 헌정기념관의 국회의원 개인기록 수집 및 관리 사례 연구를 토대로
- 서신, 일정 다이어리, 각종 문서, 디지털 자료, 웹 기록, 선거 및 보도자료 등으로 국회의원 개인기록을 분류하고 국회의원 개인기록 수집의 범위 및 방법의 체계화를 시도하였음.

○ 한은정(2008), 황길례(2010)의 연구가 국회의원 생산·접수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경험적 접근을 토대로 기록화에 접근했다면, 김남희(2016)는

- 국민의 알 권리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공공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는 국회의원의 기록의 범위 및 내용을 분석하고,
- '국회의원기록물관리법'의 제정, '국회의원기록관'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이경선(2017)은 본격적인 법제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음. 법안은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권한과 활동범위, 국회기록물 관리와

공개열람의 원칙과 방법, 국회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실현을 위하여 '국회기록관'을 국회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제안하고 있음.

○ 한편 김장환(2018)은,

- 국회 내 공공기록물 영구관리기관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의 연혁 및 현황,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 국회의원 관련 기록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고('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비견되는 '국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 「국회기록물 관리규칙」에 명시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을 국회의원, 국회의장단, 국회 소관 기관들의 기록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가 이중으로 국회의원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직제 개편안을 제안하였음.

○ 최근의 연구로 박소정(2021)은,

- 기존 연구 성과 및 국회기록물 관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국회의원 기록물의 영역 및 범위를 정리하고,
- 국회의원 관련 기록의 수집 개선방안으로 1)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원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국회 내부기관 및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 방안을 마련하고 2) 미국이나 영국 사례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웹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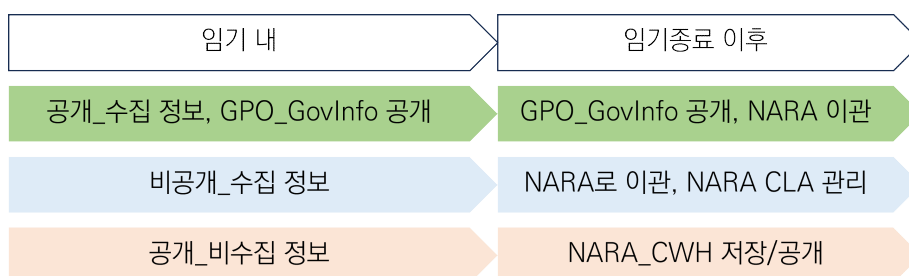
○ 기존 연구들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국회의 '기록관'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필요성과, 국회기록관 설치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2023년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한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학술적·실천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긴 시간에 걸친 제도적·행정적 진전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최근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2020)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보 생산 및 접수 당사자인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및 이관을 제도화할 현실적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못한 현실임.

### 3. 국회의원 기록 관련 해외사례: 미국의회

〈그림 1〉 미국 연방의회 기록 관리 체계



○ 미국의 연방 국가 기록은 「연방 기록 관리 법(Federal Records Act)」에 따라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 소관이며, NARA는 연방의회 기록 관리를 위해 의회아카이브센터(The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이하 CLA)를 운영하고 있음(<https://www.archives.gov/legislative>).

- 법에 따라 역대 미 연방의회는 임기가 종료되면 관련 기록을 NARA로 이관했고, NARA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여 공개 여부 및 공개등급을 결정하고 관리했음.

○ 그런데 의회 정보의 공개범위가 넓어지고 디지털화된 형태로 생산·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의회의 공개 정보를 인쇄본만이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수집·관리해온 정부 인쇄국(Government Publishing Office, 이하 GPO)의 아카이브가 중요해졌음. 2003년부터 GPO와 NARA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GPO & NARA. 2023).

○ GPO는 1861년 미국 연방의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음. 연방의회 기관이지만,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식문서를 발간 및 배포하는 공식기관임.

○ 1993년 연방의회가 「GPO 전자정보 접근 강화 법(GPO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 Enhancement Act)」을 통과시키면서, GPO는 새로 발간하는 미 연방정부 공식문서와 함께 기존에 발간했던 인쇄본 자료들의 전자정보화를 본격화했음.

○ 1994년부터 GPO는 온라인으로 연방정부 공공자료를 제공하는 연방디지털시스템(FDsys)을 운영했고, FDsys는 2018년 GovInfo로 대체되었으며, 현재 GovInfo가 미 연방 입법·행정·사법부의 공식 공공정보 포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www.GovInfo.gov](http://www.GovInfo.gov)).

○ 2003년 NARA와 GPO 사이에 최초로 맺어진 MOU는 2012년에 1차 갱신되었고 2023년 9월에 2차 갱신되어 적용되고 있음.

- MOU에 따르면, GPO의 전자화된 연방정부 정보는 매년 NARA로 이관되며, NARA는 이관된 정보를 목록화하여 공개하고 있음.
- NARA 이관 후에도 GPO는 자체 생산한 전자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음.

○ 현재 임기가 종료된 연방의회 의 기록 중 공개기록은 NARA의 CLA와 GPO의 GovInfo를 통해 검색·접근할 수 있으며, 비공개기록은 관련 법률과 NARA의 기록관리방침에 따라 NARA CLA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음.

○ 또한, NARA는 2005년 임기를 개시해 2006년 종료된 109대 의회부터, 임기종료된 의회의 공개되어 있지만 수집되지 않았던 웹 정보들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의회 웹 저장고(Congressional Web Harvest, 이하 CWH)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https://www.archives.gov/legislative/research/web-harvest.html>)

- CWH는 개별 상·하원 의회의원·상·하원의 모든 위원회, 각종 원내 의원 조직 홈페이지를 원상태 그대로 수집, 보존하여 공개하고 있음.
- NARA는 CWH에 관한 한 정보의 정확성 판별이나 정정 등의 작업을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저장하고 공개하고 있음을 밝힘.

○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의원의 임기 중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미국이 더 넓음. 미국의 의원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임기 중 국회의원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재산(변동), 해외여행 내역 등이 있고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 미국 연방의회 의원은 여기에 더하여 선물내역, 상시 재정지출내역, 법적 비용 지출 관련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www.house.gov/; www.senate.gov).

○ 임기 중 공개 정보를 웹상에서 제공하는 형식은 우리 국회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더 체계적이지만, 검색 기능에서는 미국 시스템이 접근성이 뛰어나.

- 우리나라 국회가 임기 중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시스템마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미국 의회의 정보제공 방식은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키워드별, 브라우저별, 캘린더별 등 검색기능을 다층화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특히 임기종료 후 기록정보의 제공방식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NARA 시스템이나 GovInfo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모두 다층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나 국회 기록보존소 모두 검색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확인됨.

○ 이런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이에 입각한 인력 및 재정투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미국 GPO의 디지털화는 1993년부터 입법을 통해 뒷받침되었고, NARA의 기록 수집 및 관리, 전자화 역시 그때 그때마다 입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발전해 왔음.
- NARA와 GPO의 MOU를 통한 협력방법은 우리 국회 기록 수집 및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각 기관의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협력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NARA의 CWH는 방대한 웹 저장고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임.

## 4.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기준과 범위

○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가운데 당대에 어디까지 기록 및 보존 정보로 판단할 것인가’는 의정활동 자체에 대한 정의와는 다른 차원을 가짐. 제도 발전 단계나 재정 투입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전체 의정활동 중 부분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도적 진전과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 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정의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있을 때 중장기적 계획이 가능해짐.

○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영역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이 헌법 및 법률, 규칙 등에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함. 이런 정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국회의원은 활동의 제도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관리되어야 하는 정보 영역이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

〈그림 2〉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정보 영역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생산·접수되는 정보는 1) 의원 개인이나 의원실에 관계된

정보인가, 2) 원내정당·위원회 및 본회의 등 국회 전체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적 활동인가에 따라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의원 개인의 활동을 넘어 국가재정으로 급여를 받는 보좌진의 지원을 받으며, 국회사무처 등 국회 기관의 인적, 조직적 지원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각 활동영역의 근거 법률 및 규칙만이 아니라, 법적 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규정 및 국회 기관들의 내규를 포함하여 정리함.

## 1) 의원 개인 정보의 제도적 근거

### ① 의원대우/의원실 운영

- 「국회법」 제30조(수당·여비)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

### ② 공직윤리 의무

-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9조(겸직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종사금지)
- 「공직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의 행에 관한 국회규칙」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③ 이해충돌방지 의무

- 「국회법」 제4장의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④ 원내 경력 사항

- 「국회법」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33조(교섭단체),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1조(상임위원장), 제44조(특별위원회),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50조(간사)

#### ⑤ 징계 관련 사항

-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국회법」 제155조(징계),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59조(심문), 제160조(변명), 제162조(징계의 의결),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⑥ 개인 정치활동/지역구 활동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국회사무처 내규)
-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7장(선거운동)

## 2) 국회 활동 정보의 제도적 근거

### ① 회의참여 활동

-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 「國會議員請假 및 缺席에 관한 規則」
-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 ② 위원회/연구단체 등 기구 활동

-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4조(특별위원회), 제57조(소위원회)
-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 ③ 입법 및 입법 외 정책 활동

-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82조의2(입법예고), 제64조(공청회) 제65조(청문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 「입법연구활동지원등에관한내규」(국회사무처 내규)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국회사무처 내규)
-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업무에 관한 내규」(국회사무처 내규)
- 「의회·법률정보회답내규」(국회도서관 내규)
-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업무에 관한 내규」(국회입법조사처 내규)
- 「입법참고자료요청에관한처리내규」(국회입법조사처 내규)
-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국회예산정책처 내규)
-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국회예산정책처 내규)

#### ④ 국가재정 관련 활동

-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 ⑤ 국정감독 활동

-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법」

#### ⑥ 외교 활동

-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 「국회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내규」
- 「의회외교포럼 운영 지침」
-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

#### ⑦ 원내 정당 활동

-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 ⑧ 청원 업무

- 「청원법」
-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제127조의3(국민권의 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 「국회청원심사규칙」
- 「국회청원심사규정」

## 5.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 관련 제도 현황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명시한 「국회법」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29조(겸직 금지)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제44조(특별위원회)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7조(소위원회)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 제65조(청문회)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공개 원칙을 규정한 가장 상위 규범은 ‘정보공개법’이며,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국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 규정 및 내규를 두고 있음.

-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규칙)
- 「국회정보공개규정」(국회규정)
- 「디지털플랫폼국회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 「국회사무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국회사무처내규)
-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운영 내규」(국회사무처내규)
-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국회예산정책처내규)

- 「국회입법조사처 정보공개심의회 내규」(국회입법조사처내규)
  - 「열린국회정보포털 운영내규」(국회사무처내규)
- ‘정보공개법’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의 취지에 따라, 국회는 다양한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열린국회정보포털’임.
- 이 시스템은 2020년 1월 제정된 국회사무처 내규 「열린국회정보포털 운영내규」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음.
- 2023년 2월 국회는 「디지털플랫폼국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회사무처에 ‘디지털플랫폼국회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 정보의 정보화를 총괄하게 하도록 하였음.
-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국회는 “국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회 소속기관 및 외부기관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통합·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지향하는 국회”로 정의되며,
  - “국회의 디지털플랫폼은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어 있음.

## 6.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 현황

### 1) 웹 공개 정보 현황

○ 현재 국회는 국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10여 개의 정보시스템 및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열린국회정보포털’을 통해 원본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각 시스템 탑재 정보를 개괄함.

#### ① 국회 제공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 국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쪽지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는 주요약력, 선거구, 소속위원회, 선수 경력, 사무실 정보, 홈페이지 정보, 보좌진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3〉 국회 제공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사례



\* 출처: <https://www.assembly.go.kr/members/21st/KIMJINPYO>

○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원 정보처럼 의원 개인이 운영하는 SNS 채널 정보나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최근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원들은 드물며, 의원별로 매인 정보채널로 활용하는 SNS 매체도 다양하게 분화되는 추세임.

○ 향후 ‘디지털플랫폼국회’ 관련 사업이 진척되어 정보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임기종료 후 웹 아카이빙 소스로 활용할 수 있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영역 가운데 ‘개인 정치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

## ② 국회 위원회 홈페이지

○ 현재 국회에서 제공하는 위원회 홈페이지 양식은 동일하지만, 위원회별 홈페이지 수록 정보의 범주, 정보제공 기간 등은 위원회마다 다양함.

- 2000년 이후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음.

- 정보범주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소관 사항, 소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지만, 국회법 상 청원심사나 행정입법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음.

〈그림 3〉 국회 위원회 홈페이지 예시: 국회운영위원회

The screenshot shows the '국회운영위원회' (House Steering Committee) websit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국회개혁특위' (House Reform Special Committee) and displays a list of 10 items. The table below summarizes the data from the screenshot.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0	국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관리자	2005-07-08	3259	
9	국회개혁특위 합의내용 요약(총괄)	국회운영위원회	2005-06-30	3173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2005-06-30	15524	
7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운영위원회	2005-06-23	2926	
6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2005-06-23	2796	
5	인사정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2005-06-23	15436	
4	국회개혁특위 계류안건(소위법)(2005.6.20.현재)	국회운영위원회	2005-06-20	2957	
3	국회개혁특위 현황(2005. 6. 20.현재)	국회운영위원회	2005-06-20	2982	
2	의견조회 관련 개정법률안(총12개법안)	국회운영위원회	2005-05-13	2970	
1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운영위원회	2005-05-13	3023	

\* 출처: <https://steering.na.go.kr:444/steering/reference/reference06.do>

〈그림 4〉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정보 검색 결과

The screenshot shows the '열린국회정보' (Open Korea Information) website. The search results for '국회개혁' (House Reform) are displayed in a table.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indicating that no data was found for the search crit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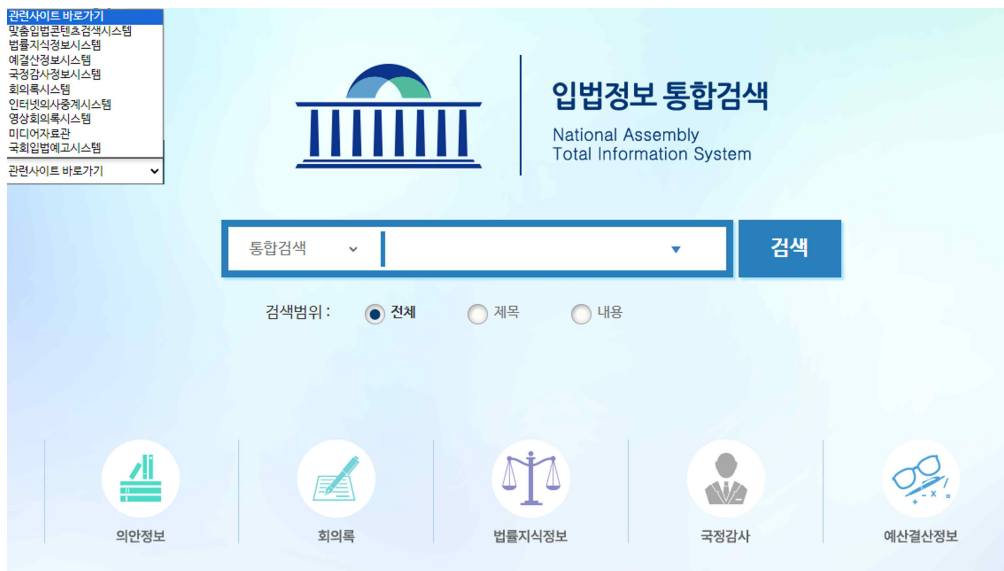
번호	위원회명	제목	작성일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그림 3>과 <그림 4>를 비교해보면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와 국회정보공개포털을 표방하고 있는 열린국회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2000년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유관 특별위원회들의 활동보고서 및 관련 기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열린국회정보의 위원회 정보란에서 관련 특별위원회를 검색하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뜸.

### ③ 국회 입법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 ‘입법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은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예산결산정보, 회의록시스템, 인터넷의사증계시스템, 영상회의록시스템, 미디어자료관,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5> 국회 입법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nsrch/main.do>

- 2023년 10월 현재,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되는 시스템 간 정보 통합 정도는 높지 않으며, 각각의 시스템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 체계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 작업이 완료되면 국회기록기관이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후 의정활동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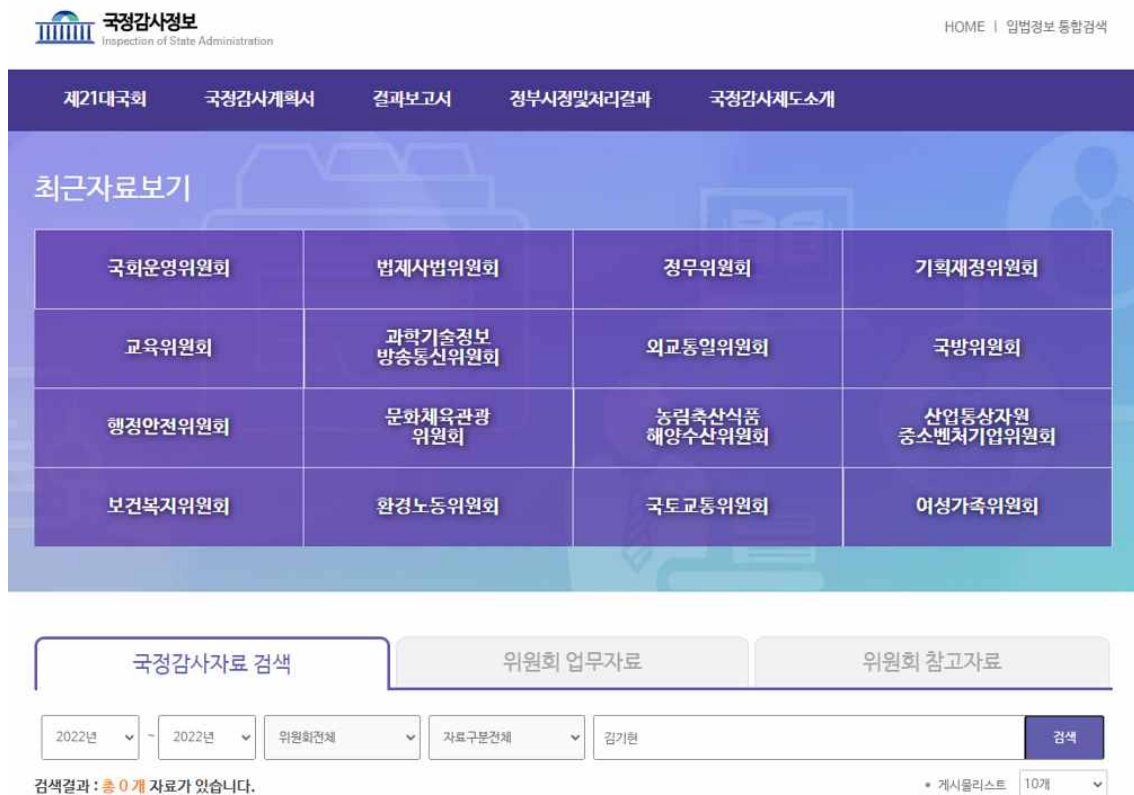
○ 현재 정보검색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개별 시스템 내 정보검색 기능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집되고 있지만 공개 정보로 전환되지 않은 정보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임. 후자의 정보들 중에는 임기 중에도 공개될 수 있지만 비공개로 남겨져 있는 정보가 있고, 제도적 제약 때문에 임기 중에는 공개될 수 없는 정보가 있음.

#### ④ 국회 국정감사정보 시스템

○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서는 16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위원회별 국정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정부시정 및 처리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검색기능을 제공함.

○ 그런데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별 의원을 키워드로 한 정보는 검색이 불가능함.

<그림 6> 국회 국정감사정보 시스템



\*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inspections/main.do#moveTab>

○ 현재 국정감사시스템이나 예결산정보시스템 등은 회의록 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지 않으며, 의원별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회의록데이터에서도 의원별 정보는 법안발의 목록 정보 수준에서 검색만 가능하며, 의원의 발언내용을 키워드 통합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회의록데이터에 의원별 키워드 검색 기능을 탑재해야만 연계된 다른 시스템에서도 의원별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별 의원실에서 소관 행정부처에 보낸 서면질의서, 자료요구서와 부처의 답변서 및 제공자료는 수집되고 있으나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고 공개되고 있지도 않음.

- 현재 관련 자료는 국회 내부 전산망인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및 '입법지원통합시스템'에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는 않음.

○ 국회의원(실)과 행정부처 사이에 유통되는 정보는 국정감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법안심의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존재함. 국회의원들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서면질의나 자료요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들 중 극히 일부만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공되어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되고 있음.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게 된 행정부처의 답변 내용이나 자료는 공적 자료로 취급되어야 하며, 국정감사나 조사 등 특정 시기에 한하여 비공개로 하더라도 해당 시기가 지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되어야 함.

## ⑤ 열린국회정보시스템

○ 2023년 5월 기준 열린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국회정보는 I. 국회의원, II. 의정활동별 공개, III. 주제별 공개, IV. 보고서/발간물의 4가지 대범주로 구성됨(「열린국회정보포털 정보공개항목」, 전체 세부내역은 <부록1> 참조)

○ 'I. 국회의원' 범주로 관리, 공개하고 있는 정보 목록은 아래와 같음.

### 1. 의원별 정보

- 1) 인적사항: 약력등, 의원이력, 위원회 경력, SNS정보
- 2) 의정활동: 대표발의/공동발의 법률안, 본회의 표결정보, 상임위 활동, 영상회의록(발언영상), 청원현황, 연구단체 가입 현황

- 3) 정책자료 & 보고서: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실, 의정보고서, 연구단체활동보고서
  - 4) 회의일정: 본회의/위원회 의사일정,
  - 5) 의원실 알람: 의원실 채용, 기자회견
2. 정당 및 교섭단체 현황: 정당 및 교섭단체 현황: 정당별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 구성현황
3. 국회의원 현황 정보
- 1) 인적사항: 약력등, 의원이력, 위원회 경력, SNS정보
  - 2) 의정활동: 대표발의 법률안, 표결정보, 상임위 활동, 영상회의록(발언영상)
  - 3) 정책자료보고서: 정책세미나 개최 현황, 국회의원 정책자료실,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 4) 의원실 알람: 보좌직원 채용, 국회의원 기자회견

〈그림 7〉 열린국회정보 시스템



\* 출처: <https://open.assembly.go.kr/portal/mainPage.do>

○ II,III,IV 대범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그림 2〉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III. 주제별 공개

#### 2. 의회외교

- 3) 의회외교 관련 단체: 의원친선협회 명단, 의원연맹 회원명단, 의원연맹별 보조금 예산,

의회외교포럼 구성, 의회외교포럼 활동보고

4) 의회외교 실시내역: 의회외교 실시내역

5) 국회의원 직무상 국외활동: 국회의원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내역

### 3. 재정

2) 국회의원 수당 및 지원 예산: 수당 등 지급 기준, 의원실 지원경비 현황, 국회의원 지원예산 총액

### 4. 행정

4) 감사: 재산신고내역, 주식 및 백지신탁 공개, 국회의원 겸직 결정내역

## 2) 종합

○ 현재 정보공개 현황을 <그림 2>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정보 영역과 비교함.

○ ‘의원실 운영’ 관련 정보 중 예산 총액 및 개요 정보는 <그림 8>처럼 공개되고 있으나, 재정집행내역 및 결산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재정집행내역은 단순히 지출증빙자료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원실 단위로 진행되는 의정활동의 전체 사업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인만큼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임기 중 정보가 공개되어야 임기종료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공개 시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의원실 운영 재정정보만이 아니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실), 교섭단체 대표(실) 등의 재정집행내역과 결산정보 또한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는데 공개가 필요하며, 임기종료 후 국회기록물로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함.

○ 물론 전체 국회 결산 정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별도의 범주로 관리되어야 하며, 결산 총액 단위 정보가 아니라 세부 재정집행내역까지 별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 기존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처 단위에서 재정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현재 국회가 재정정보를 관리하는 관행 전반에 개선이 필요함.

〈그림 8〉 2023년도 의원실 지원경비 현황: 예산 기준

2023년도 의원실 지원경비 현황

(단위: 원)

구분		지금액	지급방법	지원근거규정	
사무실 운영지원	사무실 운영비	비서실 운영비	월 180,000	정액지급	
		업무추진비	연 3,483,840	증빙 후 사후지급	
	공공요금 (전화·우편 등)	월 950,000	정액 지급 (월 95만원에서 전화요금 공제)		
	사무실 소모품	연 5,192,000	현물: 소모품 신청서 현금: 증빙 후 사후지급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의원차량 유류비	월 1,100,000	정액지급	「국회의원 입법 활동 차량비 지급 규정」 제2조	
	의원차량 유지비 (위원장)	월 358,000 (월1,000,000)			
	공무수행 출장비	연 평균 11,414,790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권역별 차등		
입법 및 정책 개발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 25,463,330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정책자료 발송료	연 평균 7,554,300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 세대수별 차등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0,000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	연 12,000,000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보좌직원 매식비	연 7,703,330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 출장비	연 917,850			
	의원실 업무용 택시	연 1,000,000			

※ 단,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월 67만원 지급함

\* 출처: <https://open.assembly.go.kr/portal/infs/cont/infsContPage.do?cateId=NA23000>

○ ‘이해충돌방지 의무’ 관련 활동 정보는, 이해관계 등록 등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정보공개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법 시행을 위한 행정부 시행령과 대법원 규칙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규칙은 11월 제정, 시행되었음.

- 그러나 국회는 현재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 2021년 5월 「국회법」 제32조의2~제32조의6을 신설하였으나 ‘사적 이해관계등록’은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징계 관련 정보’는 현행 제도에 따라 징계심의 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징계가 결정되었을 경우 징계내용만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표된 징계결과를 별도로 관리,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역대 국회의원의 징계 현황 및 징계결정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자료는 임기종료 후에도 보존되어야 하는 정보로 별도 관리되어야 함.
- 의원 징계는 당대 사회적 규범을 반영해서 의원 윤리규범에도 계속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보다 징계에 이르는 원리나 규범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

○ ‘의원 개인 정치활동’은 현재 의원실 발간 보도자료 수준에서 수집·공개되고 있으나,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한 세미나, 토론회, 공개강연 등에서의 발언 내용, 의원 임기 중 발간 저서 등은 의원실에서 등록·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기록으로 관리할 때도 국회기록기관이 직접 수집하는 방식을 넘어 의원실에서 별도 관리한 기록물을 전체 이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의원의 ‘지역구 활동’ 관련 정보는 현재 지역현안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 세미나 등의 정책자료로 수집·공개되고 있으나, 의원의 자격으로 한 지역구 관련 행사 참여 정보, 의정활동 보고회, 지역구 소속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관련 활동 등도 의원실에서 등록·관리하도록 해야 함.

-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 국회의원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중 지역구 관련 정치활동을 진행한 정보는 해당 지역구민만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임.

○ 현재 지역구 활동 관련 정보는 대부분 의원(실)이 운영하는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보가 집적되고 있으며,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거나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임기종료 이전 임기 관련 활동 정보는 소실되고 있음. 향후 기록용으로 웹 정보 수집 방법을 활용하게 되더라도, 기준을 마련해 의원(실)에서 임기 중 정보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함.

## 6.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관련 제도 현황

○ 헌법기관인 국회의 공공기록물 관리를 규율하는 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며, 국회가 국회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두고 있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음.

- 「국회도서관법」
- 「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직제」(국회규칙)
- 「국회기록물관리규정」(국회규정)
- 「국회기록물관리내규」(국회도서관내규)
-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국회도서관지침)
- 「국회 내 수집자료 관리지침」(국회도서관지침)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물 대여 관리 지침」(국회도서관지침)
- 「국회기록보존소 서고 관리 지침」(국회도서관지침)

○ ‘공공기록물법’ 제10조에 따라, 국회가 지정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이며, 국회도서관에서 국회기록물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제상 기구는 ‘국가기록보존소’임(「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

○ 「국회도서관법」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직무 목적은 ‘국회 입법활동 지원’이며, 직무로 열거 명시한 직무 가운데 4.를 제외한 1~8의 직무 역시 입법활동 지원 목적의 업무임. 반면 4.의 직무는 입법활동 지원과는 목적이 다른 공공기록물 관리의 직무로 구성됨.

○ 「국회도서관 직제」에 따르면 국회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음.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 및 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공공기록물법’의 취지를 국회에 구현하기 위한 국회 내 가장 상위 법규임. 그런데 ‘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기관’에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열거 명시되어 있을 뿐 국회의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조 1.).

-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도서관이 직무상 명시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려면 국회의원(실)을 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에도 제외되어 있음.

○ 현재 국회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규 가운데 관리대상으로 ‘국회의원(실)’이 명시된 것은 「국회 내 수집자료 관리지침」(국회도서관지침)이 유일한데, ‘지침’에 따르면 국회의원(실)이 생산·접수한 정보는 ‘관리’나 ‘이관’의 대상이 아니라 ‘기증’과 ‘방문 수집’의 대상으로 명시됨.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국회 내 수집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국회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에 기증 의사를 밝힌 자료
- 제3조(국회의원실 자료의 수집) ①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실에 국회의원으로부터 발간한 자료의 기증을 요청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수집한다. ②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실에서 기증 의사를 밝힌 자료를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 7.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관리 현황

○ 2023년 1월 기준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제11조)에 따르면, 국회 기록물은 11개의 범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음.

1. 처리과, 위원회, 의원실 공통업무
2. 국회사무처
3. 국회도서관
4. 국회예산정책처
5. 국회입법조사처
7. 위원회공통업무
8. 위원회고유업무
9. 의원실공통업무
10. 의원실고유업무
11. 시청각기록물 생산처리과 공통업무

○ 국회기록물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정보 내역과 <그림 2>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영역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9>와 <그림 10>임.

- 국회의원 개인 생산 및 접수 정보와 국회 활동 정보 대부분은 이를 지원하는 국회 사무처 등의 이관 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 개인 정치활동, 지역구 정치활동 관련 정보는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라 국회의원(실)의 기증이나 기록담당기관의 방문 수집에 의존하고 있고,
- 교섭단체 활동 등 원내 정당활동은 관리 대상 정보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기증이나 방문 수집의 대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림 9〉 국회의원 의정활동 영역과 기록물 관리 현황: 의원 개인 정보

의원 개인 정보	
의원대우	국회사무처 담당과: 수당, 차량...
의원실 운영	국회사무처 담당과, 의원실 공통/고유업무
공직윤리 의무	국회사무처 담당과: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 의무	2024년 7월부터 시행, 담당 부서 미 지정
원내 경력 사항	국회공보: 의장단, 위원장, 간사, 교섭단체 대표...
징계 관련 사항	윤리위 공동업무/고유업무 자료
개인 정치활동	국회 별도 경비지원활동은 담당과 기록물로 이관, 이외 자료는 국회의원(실) 기증이나 방문 수집에 의존
지역구 정치활동	

〈그림 10〉 국회의원 의정활동 영역과 기록물 관리 현황: 국회 활동 정보

	국회 활동 정보
국회사무처 회의지원, 회의록 담당과 기록물	회의참여 활동
위원회 공동업무, 연구단체 지원 사무처 담당과 기록	위원회/연구단체 활동
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기록물	입법 및 정책 활동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담당과 기록물	국가재정 관련 활동
위원회 공동업무 기록물	국정감독 활동
국회사무처 담당과 기록물	외교 활동
교섭단체 활동, 의원총회 등의 기록물은 미수집	원내 정당 활동
국회사무처 담당과 기록물	청원 업무

○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대상 정보목록으로는 1) 임기 중 전자시스템으로 수집·공개되고 있거나, 2) 내부 전자시스템으로 집적되고 있지만 비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 김장환(2017)에 따르면, ‘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과 달리 각 처리과로부터 이관을 받지 않고 국회전자문서시스템 총괄 부서인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로부터 매년 일괄 이관’받고 있다고 함.

- 2017년 이후, 국회의원실은 국회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과 행정부를 대상으로 자료요구 및 답변서나 자료 수령 목적으로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국회기록보존소는 임기종료 후 이 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일괄 이관받을 수 있지만,
- 국회의원실의 이용도가 저조하여 이관되는 정보량이 적고 기록적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임기 중 전산시스템으로 축적된 정보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는데 또다른 어려움으로, 전산시스템 탑재 정보를 이관받을 수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기술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음.

○ 2023년 시점 국회의원(실)이 생산·접수하는 정보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회의원(실)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사의뢰 및 회답 관련 정보는 상당 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국회의원(실)의 전산시스템 이용도가 낮았던 것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전산시스템 접근성이 낮았던 점과, 1:1 서비스를 통한 정보관리에 대한 신뢰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음.
- 최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세대교체 등으로 전산시스템 접근성이 높아졌고, 조사 회답 전산시스템이 1:1 정보유통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유통하거나 축적하는 것에 대한 불신은 1:1 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의뢰를 하게 만드는 요인임.

○ 국회의원(실)과 행정부처 사이에 서면질의나 자료요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자료의 유통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sup>1)</sup>의 이용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함.

- 국회의원(실)은 국정감사 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정부 자료요구나 질의를 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견제를 하거나 입법발의를 함으로써 정책적 성과를 축적하는 동시에 대유권자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개별 국회의원(실)이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의원(실)의 분석이 종료되어 보도 자료 등의 형태로 자발적 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실)의 독점적 정보로 관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함.

○ 또 한가지, 국회의원(실)이 생산·접수하는 중요 정보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접수되는 제보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인데, 관련 정보는 대부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소실되고 있다고 함.

- 제보의 성격상 임기 중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하며 임기종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적 제약 때문에 곧바로 공개될 수는 없지만,
- 의원의 자격으로 접수하는 제보이고 제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권한 역시 의원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기종료 후 비공개정보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국회기록물 관리시스템, 특히 비공개정보에 대한 기밀유지와 관리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국회의원(실)의 자발적 이관이 가능해질 것임.

○ 한편 국회기록보존소가 수집·관리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확인한 결과를 예시한 것이 <그림 11>임.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선수가 높은 6선 의원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임.

- 해당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2023년 현재 23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였음.
- 검색결과 검색 총 건수는 47건이었으며, 기록물 생산연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였음.
- 2건은 국회기록보존소 수집 기록물이었고 나머지는 위원회, 국회사무처 이관 자료로 행정부처에 발송한 서면질의서 및 자료요구서와 답변서 등이었음.
- 총 47건 가운데 온라인 원문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록물은 2건, 오프라인 원문서비스 제공 건수는 38건이었고 7건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음.

---

1) 현재는 국회 내부 기관 간 입법지원시스템과 국회-행정부 대상 정보유통 전산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 〈그림 11〉 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원 검색 예시

통합검색

Q 검색
결과내 재검색

전체
소장 기록물 검색
웹페이지 검색

	기록물건 (39)					
전체 (106)	생산일자	건제목	생산기관	생산부서	유형구분	원문
기록물건 (7)	2014.10.31	대정무절문요지서(박병석의원)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일반문서	
기록물건 (39)	2015.12.31	서류(자료)제출요구현황(박병석의원)	기타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일반문서	
국회간행물 (1)	2014.04.10	박병석 국회의부의장 서한 발송의뢰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일반문서	
국회 연표 (56)	2007.09.28	서류제출요구현황(박병석의원)	기타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일반문서	
국회특별위원회 기록 (0)	2014.06.09	(박병석 부의장)기록물수집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관리과	일반문서	

\* 출처: <https://archives.nanet.go.kr/search/searchList.do>

○ 해당 사례의 경우, 검색 건수가 국회 홈페이지나 열린국회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건수보다 적다는 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현역의원이므로 국회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되는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할 수 있으며, 국회기록보존소 제공 정보는 양이 아니라 질에서 차이가 있어야 함.
- 당대에는 비공개되었거나 비공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개 시스템 미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정보가, 임기종료 후에 공공기록물로 보존되고 접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닐 수 있어야 함.

○ 검색된 정보 가운데 행정부처와 소통한 정보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정보는 공공기록물로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2016년 이후 정보는 검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 2015년까지 16년 동안 생산·접수된 기록물이 47건에 그친다는 점은 국회기록물 관리의 짧은 역사를 감안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결과임.

○ 국회기록보존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강화,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확대' 등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 12월 서비스 개시 목표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홈페이지 검색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 대한민국 입법부로서 국회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통시적 인식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임.

○ 그러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개선과는 다른 차원에서,

- 지금까지 확보한 콘텐츠를 검색 가능한 정보로 목록화 작업,
- 당대 비공개 정보의 능동적 공개를 위한 사전 작업,
- 국회사무처가 공개하고 있는 의정활동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확장하는 작업 등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9.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 방안

### 1)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보존 기준

○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관(行政博物館)'로 정의함.

○ '국회기록물' 관련 규범은 '국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하는 일련의 기록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야 함.

○ 현재 국회기록물 관련 규범에는 '국회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없음. 대신 적용범위에서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기관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서부터, '국회기록물'에 대한 오인된

인식이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함. 이 정의에 따르면, 국회기록물이란 ‘국회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되어야 함.

-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 등의 조직,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기구의 지원을 받아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임. 이런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 생산·접수된 정보는 비서실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정의되고 관리되는 것임.
- 국회는 300명 국회의원의 회의체이며, 국회사무처 등은 300명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임. 따라서 국회사무처 등이 생산·접수하는 정보는 국회사무처 정보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보이며 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함.

○ 국회의원은 300명의 회의체로 활동하고 결정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300명의 국회의원이며, 개별 국회의원들이 주체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생산·접수되는 정보는 전체로 국회 단위로 분류되는 동시에 개별 의원들의 직무활동 관련 정보로도 범주화되어야 함에도, 현재 국회기록물 관리 규범 속에는 이런 관념이 존재하지 않음.

○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을 한다는 것은 ‘헌법 및 법률, 규칙 등에 제도적으로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이며, 보존가치가 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 역시 ‘국회의원의 직무’라는 관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앞의 ‘4.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기준과 범위’에서 정리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영역별 제도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기록물 수집 및 관리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함.

- 이렇게 본다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은 협소하게 국회의원(실)에서 기증하거나 이관하는 기록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 국회의원(실) 제공 정보를 포함하여 국회 각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포괄해 정의되어야 하며, 현재 접수·관리되는 기록물을 국회의원의 범주로 재가공하여 목록화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 ‘국회기록물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기록관’ 설치

○ 기존 연구들도 다양한 논거로 ‘국회기록물법’ 제정과 ‘국회기록관’ 설치를 제안해 왔지만,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국회기록물 관련 제도와 관리 현황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동 제안을 지지함. 국회 기록물관리 규범의 목적 및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독립적인 ‘국회기록물법’ 제정이 필요함.

○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목적은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공직자가 임기종료 후 직무 관련 기록을 남겨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재직 중 공공기록에 대한 책무를 의식하여 투명한 직무집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것이 포함됨.

○ ‘국회기록물’ 관련 규범도 마찬가지로 목적에서 고려되어야 함.

- ‘국회기록물’ 규범은 300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체 국회 기관들이 공공기록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임기 중 직무집행을 하고 사후 기록을 남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에도,
- 현재 국회기록물 관리 규칙 및 규정은 ‘공공기록물법’의 시행을 위한 기술적 장치 및 절차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또한 현재 국회기록물 관리 규범은 그 정합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음.

- 현재 국회(의원) 기록물은 국회의원(실) 생산·접수 정보,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다양한 전산정보, 국회사무처 외 지원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 국회도서관이 수집하는 인쇄본 및 전산형태 정보, 국회박물관(과거 헌정기념관)이 수집해온 역대 국회의원 관련 기록물로 산재되어 있음.
- 따라서 기록물 관리는 국회의원실과 각 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 내 전산정보에서부터 인쇄물형태, 웹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취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과 기술적 인프라가 있어야만 가능함.
- 그런데 국회도서관 부서 중 하나인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집·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해 놓은 현재의 법규체계로는 국회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현재 「국회도서관 직제」로 파악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분장사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보임. 분장사무의 내용 자체는 국회기록물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가용할 수 있는 조직적,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제도 형식적으로는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회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 직제」에서 확인되는 국회도서관은 기록보존업무와는 독립적인 입법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2023년 국회도서관 업무계획」에서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내용은 전체 국회도서관의 중점 정책방향과 동떨어져 별도의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데,
- 이것은 국회도서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 기능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2009년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될 당시부터 입법지원 목적 기관에 기록물관리 업무를 분장했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해야 함.

○ 한편 국회 생산 기록물 양태 변화의 측면에서도 제도변화의 필요성이 도출됨. 최근 국회 각 주체가 생산하는 정보는 점점 더 전산 기반으로 생산·관리되고 있고, 국회 전자정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권한은 국회사무처에 부여되어 있음. 2023년 ‘디지털플랫폼 국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관련 업무 담당기관 역시 국회사무처임.

- 국회사무처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 기반 정보가 국회기록관리기관으로 연계되어야만 기록관리가 가능해지는 구조인데,
- 현재 법규체계에서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사무처 생산 전산 정보를 이관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관련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정도로 제도적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이상의 근거를 토대로, 국회 기록물 관리 정책은 국회 각 기관을 총괄할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관의 설치로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국회기록물 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회사무처 등 소속기관에 대하여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명칭이 ‘기록관’이든 아니든 권한과 자원의 문제임.

### 3)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제안

○ 앞의 제도적 제안이 정책결정자의 숙고와 결단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라면, 이하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위해 당장의 실천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개정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표 1>의 가설을 토대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현황의 경험분석을 출발하였음.

<표 1>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현황 분석틀

		임기 중		
		수집_공개	수집_비공개	비(非)수집
임기 종료 후	수집_공개	I	II	III
	수집_비공개	-	IV	V
	비수집_소실	VI	-	VII

○ 분석결과, 범주 I 에 해당하는 정보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사이에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이후 국회사무처 중심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수집, 분류, 전산화, 정보공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 축적된 정보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로 원활하게 이관되고 있지 않음.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수집, 공개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는 없음.

○ 전산화된 정보가 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은, 정보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초기 GovInfo와 NARA의 관계처럼 정기적으로 정보목록을 공유하고 목록 수준에서는 각자 검색서비스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이용자가 원문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홈페이지 연계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국회기록물관리규정’ 개정으로, 국회사무처 정보관리부서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가 정보목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호환 가능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협의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기 중 수집되지만 비공개되는 정보로는 정보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비공개 회의록, 소관위원회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 중 비공개정보, 국회의원실이 위원회를 경유하여 행정부처로 보낸 질의서, 자료요구서 및 행정부처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이 있음.

○ 현재 범주 II와 IV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림 11>에서 확인하였듯이 비공개회의록 등 임기 중 비공개되어 있던 기록들이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해 원활히 공개되고 있지는 않고 있음.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국회기록보존소의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됨.

- '2023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비공개회의록 등에 대한 공표방안 마련'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목록화, 웹 공개를 위한 전산화 작업, 기술적 인프라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관련 위원회의 공개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록화 및 전산화 작업을 위한 계획인지는 확인이 필요함.

○ 국회의원이 업무상 행정부처와 주고받은 정보는 임기가 종료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적 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는 등 국회기록보존소가 이관받은 정보 가운데 공개 및 비공개 여부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기 중 수집되지 않고 임기종료 후에도 수집되지 않아 소실되는 정보로는 국회의원의 개인 정치활동, 지역구 활동, 원내정당 활동 관련 정보를 들 수 있음.

- 앞서 밝혔듯이 국회의원이 제도적 근거에 따라 국가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으로 취급해야 하며,
- 관련 정보는 국회의원(실)의 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관대상 정보목록으로 분류하고,
- 기록이 필요한 활동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 임기 중 전산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국회사무처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및 자료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 2023.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 김남희. 2016. 알 권리와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김장환. 2017.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2018.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5): 39-71
- 박소정. 2021. 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성면섭·김장환. 2022.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가이드 구축 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14(3): 269-302
- 우윤식. 2019. 의원기록물관리를 위한 의원기록관 설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이경선. 2017.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에 관한 검토. 『입법학연구』 14(1): 211-233
- 한은정. 2008. 국회의원 업무활동의 특성과 활동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황길례. 2010. 우리나라 국회의원 개인기록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GPO & NARA. 202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An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for the operation of an Agency Archives.
-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s://www.la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열린국회정보 <https://open.assembly.go.kr/>  
위원회 홈페이지 <https://committee.na.go.kr:444/portal/index.do>  
국회기록보존소 <https://archives.nanet.go.kr/>  
미국 GPO GovInfo <https://www.govinfo.gov/>  
미국 NARA The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https://www.archives.gov/legislative/>

## 부록: 열린국회정보 제공 정보목록(2023.05.23. 기준)

연번		정보공개항목
(1)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인적사항	인적사항(약력 등)
(2)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인적사항	의원이력
(3)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인적사항	위원회 경력
(4)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인적사항	SNS 정보
(5)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정활동	대표발의 법률안
(6)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정활동	공동발의 법률안
(7)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정활동	본회의 표결정보
(8)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정활동	상임위 활동
(9)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정활동	영상회의록(발언영상)
(10)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정활동	청원현황
(11)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정활동	연구단체 가입현황
(12)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정책자료&보고서	정책세미나
(13)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정책자료&보고서	정책자료실
(14)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정책자료&보고서	의정보고서
(15)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정책자료&보고서	연구단체 활동보고서
(16)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회의일정	의원별 본회의 의사일정
(17)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회의일정	의원별 위원회 의사일정
(18)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원실알림	의원실 채용
(19)	1.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의원별정보>의원실알림	기자회견
(20)	1. 국회의원>2.정당및교섭단체현황	정당별 의석수 현황
(21)	1. 국회의원>2.정당및교섭단체현황	교섭단체 구성현황
(22)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1)국회의원인적사항	국회의원 인적사항
(23)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1)국회의원인적사항	국회의원 의원이력
(24)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1)국회의원인적사항	국회의원 위원회 경력
(25)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1)국회의원인적사항	국회의원 SNS 정보
(26)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2)국회의원의정활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7)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2)국회의원의정활동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28)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2)국회의원의정활동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
(29)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2)국회의원의정활동	국회의원 영상회의록(발언영상)
(30)	①I.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 정보)3)정책자료보고서 ②III. 주제별공개)1. 정책) 1)국회의원입법및정책개발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 개최 현황
(31)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3)정책자료보고서	국회의원 정책자료실
(32)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3)정책자료보고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33)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4)의원실알림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
(34)	1.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4)의원실알림	국회의원 기자회견
(35)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1)역대국회구성	역대 국회 구성 정보
(36)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1)역대국회구성	역대 국회 선거일, 의원정수, 입기정보
(37)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1)역대국회구성	역대 국회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분포
(38)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2)역대국회의장단	역대 국회의장단 정보
(39)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3)역대주요원내정당	역대 주요 원내 정당 정보
(40)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3)역대주요원내정당	역대 정당별 국회의원 선거결과
(41)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4)역대국회의원	역대 국회의원 현황
(42)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4)역대국회의원	역대 여성 국회의원 현황
(43)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4)역대국회의원	역대 국회의원 재선 현황
(44)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5)역대의안통계	역대 의안 통계
(45)	1. 국회의원)4.역대 국회정보) 6)역대기록물관리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현황
(46)	①II. 의정활동별 공개) 1.본회의안건처리 ②III. 주제별공개)6. 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의정	본회의 일정
(47)	II. 의정활동별 공개) 1.본회의안건처리	본회의 안건처리_법률안
(48)	II. 의정활동별 공개) 1.본회의안건처리	본회의 안건처리_예산안
(49)	II. 의정활동별 공개) 1.본회의안건처리	본회의 안건처리_결산
(50)	II. 의정활동별 공개) 1.본회의안건처리	본회의 안건처리_기타
(51)	II. 의정활동별 공개) 1.본회의안건처리	본회의 회의록
(52)	II. 의정활동별 공개) 1.본회의안건처리	국회의원 회의 출결현황(본회의)
(53)	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위원회 현황 정보

(54)	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위원회 위원 명단
(55)	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위원회 계류의안
(56)	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위원회 자료실
(57)	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위원회 회의록
(58)	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국회의원 회의 출결현황(위원회)
(59)	II. 의정활동별 공개> 3.날짜별의정활동공개	날짜별 의정활동
(60)	II. 의정활동별 공개> 4.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61)	①I.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 의원별정보>정책자료&보고서 ②I. 국회의원>3.국회의원현황정보> 3)정책자료보고서 ③III. 주제별 공개>1.정책> 1)국회의원입법및정책개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내역
(62)	① I. 국회의원>1.국회의원 검색> 의원별정보>정책자료&보고서 ②I. 국회의원>3.국회의원현황정보> 3)정책자료보고서 ③ III. 주제별 공개>1.정책> 1)국회의원입법및정책개발	국회의원 소규모 연구용역결과보고서
(63)	III. 주제별 공개>1.정책> 1)국회의원입법및정책개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64)	III. 주제별 공개>1.정책> 2)국회의원연구단체	연도별 연구단체 건수
(65)	①I.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2)국회의원의정활동 ②III. 주제별 공개>1.정책> 2)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현황
(66)	III. 주제별 공개>1.정책> 2)국회의원연구단체	연구단체 활동실적
(67)	III. 주제별 공개>1.정책> 2)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연구단체 현황
(68)	①I. 국회의원>3.국회의원 현황정보> 3)정책자료보고서 ②III. 주제별 공개>1.정책> 2)국회의원연구단체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69)	III. 주제별 공개>1.정책> 2)국회의원연구단체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집행현황
(70)	III. 주제별 공개>1.정책> 3)입법예고	진행중 입법예고
(71)	III. 주제별 공개>1.정책> 3)입법예고	종료된 입법예고
(72)	III. 주제별 공개>1.정책> 4)법안심사및처리	법률안심사 및 처리(처리의안)
(73)	III. 주제별 공개>1.정책> 4)법안심사및처리	법률안심사 및 처리(계류의안)
(74)	III. 주제별 공개>1.정책> 4)법안심사및처리	법률안심사 및 처리 (위원회안,대안)
(75)	III. 주제별 공개>1.정책> 4)법안심사및처리	법률안심사 및 처리 (본회의부의안건)
(76)	III. 주제별 공개>1.정책> 4)법안심사및처리	법률안심사 및 처리 (최근본회의처리의안)

(77)	III. 주제별 공개>1.정책> 4)법안심사및처리	의안별 표결현황
(78)	III. 주제별 공개>1.정책> 5)국회의장자문기구현황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79)	III. 주제별 공개>1.정책> 5)국회의장자문기구현황	역대 국회의장 자문기구 결과보고서
(80)	①III. 주제별 공개>1.정책> 6)법제관련발간자료 ②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법제실 발간자료
(81)	III. 주제별 공개>1.정책> 7)법제사례연구발표	법제사례 연구발표
(82)	III. 주제별 공개>1.정책> 8)행정입법분석연구	행정입법 분석 연구
(83)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1)의회외교개요	의회외교 개요
(84)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2)국제회의	주요 국제회의 현황
(85)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3)의회외교관련단체	의원외교협의회 명단
(86)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3)의회외교관련단체	의원친선협회 임·회원 명단
(87)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3)의회외교관련단체	의원연맹 회원명단
(88)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3)의회외교관련단체	의원연맹별 보조금 예산
(89)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3)의회외교관련단체	의회외교포럼 구성
(90)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3)의회외교관련단체	의회외교포럼 활동보고
(91)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4)의회외교실시내역	의회외교 실시내역
(92)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5)국회의원직무상국외활동	국회의원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내역
(93)	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6)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94)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편성현황	국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95)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편성현황	국회예산 Q&A
(96)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편성현황	국회 예산 규모
(97)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편성현황	국회 기관별 예산 규모
(98)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편성현황	국회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99)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편성현황	국회 성질별 예산 규모
(100)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국회사무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01)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국회도서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02)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03)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04)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수입징수현황(수입항별)



(105)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수입징수현황(수입목별)
(106)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지출집행현황(단위사업별)
(107)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예산집행현황	지출집행현황(세부사업별)
(108)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계약현황	국회사무처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109)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계약현황	국회사무처 1억원 이상 계약현황
(110)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보유자산	국회 보유 자산(전체)
(111)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보유자산	국회 보유 자산(건물)
(112)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보유자산	국회 보유 자산(토지)
(113)	III.주제별 공개>3.재정> 1)국회예산현황>국회보유자산	국회 관용차량 현황
(114)	III.주제별 공개>3.재정>2)국회의원 수당 및 지원예산>국회의원 수당 지급 기준표	연도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표
(115)	III.주제별 공개>3.재정>2)국회의원 수당 및 지원예산>국회의원 수당 지급 기준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116)	III.주제별 공개>3.재정>2)국회의원 수당및지원예산>국회의원지원예산	의원실 지원경비 현황
(117)	III.주제별 공개>3.재정>2)국회의원 수당및지원예산>국회의원지원예산	국회의원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118)	III.주제별 공개>3.재정>2)국회의원 수당및지원예산>국회의원지원예산	국회의원 지원예산 총액
(119)	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조정> 연간업무추진계획보고서	국회사무처 연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20)	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조정> 연간업무추진계획보고서	국회도서관 연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21)	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조정> 연간업무추진계획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연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22)	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조정> 연간업무추진계획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연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23)	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조정> 국회연차보고서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124)	①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 조정>국회연차보고서 ②V.보고서·발간물>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연차보고서
(125)	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조정> 국회연차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연차보고서
(126)	III.주제별 공개>4.행정>1)기획·조정> 국회조직도	국회 조직도
(127)	III.주제별 공개>4.행정>2)법무> 국회소관법인	국회 및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 목록
(128)	III.주제별 공개>4.행정>2)법무> 국회소관법인	국회 및 국회사무처 법인별 보조금 예산
(129)	III.주제별 공개>4.행정>2)법무> 소송·행정심판	국회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 현황
(130)	III.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 국회인력통계	국회 인력 통계(총괄)
(131)	III.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 국회인력통계	국회 지원기관별 인력현황

(132)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사무처 직원 유형별 구성 현황
(133)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도서관 직원유형별 구성 현황
(134)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유형별 구성 현황
(135)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유형별 구성 현황
(136)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사무처 인력 구성 현황
(137)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도서관 인력 구성 현황
(138)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인력 구성 현황
(139)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입법조사처 인력 구성 현황
(140)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사무처 여성공무원 현황
(141)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도서관 여성공무원 현황
(142)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여성공무원 현황
(143)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입법조사처 여성공무원 현황
(144)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사무처 장애공무원 현황
(145)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도서관 장애공무원 현황
(146)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장애공무원 현황
(147)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입법조사처 장애공무원 현황
(148)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사무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149)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도서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150)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151)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인력통계	국회입법조사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152)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채용정보	국회채용정보
(153)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채용정보	국회채용_종합현황
(154)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채용정보	입법고시(5급) 채용현황
(155)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채용정보	8급 공개경쟁 채용현황
(156)	Ⅲ.주제별 공개>4.행정>3)인사>국회채용정보	9급 공개경쟁 채용현황
(157)	Ⅲ.주제별 공개>4.행정>4)감사>정기감사결과보고서	정기 감사 결과보고서
(158)	Ⅲ.주제별 공개>4.행정>4)감사>재산신고내역	재산신고 내역
(159)	Ⅲ.주제별 공개>4.행정>4)감사>주식및백지신탁공개	주식 및 백지신탁 공개
(160)	Ⅲ.주제별 공개>4.행정>4)감사>	퇴직 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퇴직공직자취업이력공시	
(161)	III.주제별 공개>4.행정>4)감사>퇴직공직자취업심사결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62)	III.주제별 공개>4.행정>4)감사>국회의원검직결정내역	국회의원 검직 결정 내역
(163)	III.주제별 공개>4.행정>5)청사관리>국회의실사용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164)	III.주제별 공개>4.행정>5)청사관리>입법보조원출입증발급현황	입법보조원 출입증 발급 현황
(165)	III.주제별 공개>4.행정>5)청사관리>국회공공요금	국회 공공요금
(166)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1)국회시설물안내	국회 시설물 안내
(167)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2)국회투어	국회 참관객 통계
(168)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3)국회의정연수참여	시민의정연수
(169)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3)국회의정연수참여	지방의회연수 교육일정
(170)	①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4)국회문화행사 ②III.주제별공개>6.언론·미디어·일정>5)국회일정	국회문화극장 공연 일정
(171)	①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4)국회문화행사 ②III.주제별공개>6.언론·미디어·일정>5)국회일정	국회문화극장 영화 일정
(172)	①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4)국회문화행사 ②III.주제별공개>6.언론·미디어·일정>5)국회일정	아트갤러리 전시 일정
(173)	①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4)국회문화행사 ②III.주제별공개>6.언론·미디어·일정>5)국회일정	국회개방행사 일정
(174)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5)국회방송편성표	국회방송편성표
(175)	①II. 의정활동별 공개>5.청원 ②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청원	청원 계류현황
(176)	①II. 의정활동별 공개>5.청원 ②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청원	청원 처리현황
(177)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진정	이달의 입법민원
(178)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179)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목록
(180)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도서관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목록
(181)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예산정책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목록
(182)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입법조사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목록
(183)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처리현황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184)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결과현황
(185)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결현황
(186)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187)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설치현황
(188)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총괄)
(189)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청구방법별 현황
(190)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공개방법별 현황
(191)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192)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193)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총괄)
(194)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도서관 정책에 관한 행정정보 공표
(195)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도서관 사업에 관한 행정정보 공표
(196)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도서관 행정감시 정보 공표
(197)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도서관 기타 행정정보 공표
(198)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공개제도	국회도서관 행정정보 공표목록
(199)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목록	국회사무처 정보목록
(200)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목록	국회도서관 정보목록
(201)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목록	국회예산정책처 정보목록
(202)	III.주제별 공개>5.국민참여> 6)국회민원>정보목록	국회입법조사처 정보목록
(203)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1)보도자료	보도자료
(204)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국회는 지금
(205)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상임위·본회의
(206)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그건 이렇습니다
(207)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발행물 및 보고서
(208)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의원의 맛과멋
(209)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보좌진 이야기
(210)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의원 입법안
(211)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의원실 행사

(212)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의장동향
(213)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부의장 동향
(214)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사무총장동향
(215)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국회동향기타
(216)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2)국회뉴스ON	국회뉴스ON_외부기고
(217)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3)NATV뉴스	NATV 뉴스_본회의
(218)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3)NATV뉴스	NATV 뉴스_위원회
(219)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3)NATV뉴스	NATV 뉴스_의장단
(220)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3)NATV뉴스	NATV 뉴스_인물
(221)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3)NATV뉴스	NATV 뉴스_정당
(222)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3)NATV뉴스	NATV 뉴스_토론회/세미나
(223)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3)NATV뉴스	NATV 뉴스_기타
(224)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4)출입기자안내정보	국회출입관련 신청서
(225)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일정	의사일정공지
(226)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일정	주요정치일정
(227)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일정	국회의장 주요일정
(228)	①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②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 일정>5)국회일정	위원회별 일정
(229)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일정	위원회별 전체회의 일정
(230)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일정	위원회별 소위원회 일정
(231)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일정	위원회별 공청회 일정
(232)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일정	국회의원 세미나 일정
(233)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국회보
(234)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국회사
(235)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국회경과보고서
(236)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37)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국회홍보책자
(238)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국회홍보리플렛
(239)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참관안내리플렛

(240)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대한민국60년사
(241)	IV.보고서·발간물>1.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리플릿
(242)	IV.보고서·발간물>2.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안내
(243)	IV.보고서·발간물>2.국회도서관	월간 국회도서관
(244)	IV.보고서·발간물>2.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45)	IV.보고서·발간물>2.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46)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예산 분석
(247)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결산 분석
(248)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사업 평가
(249)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50)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조세분석 및 연구
(251)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전망
(252)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 정책 및 동향 분석
(253)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대한민국 재정
(254)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대한민국 지방재정
(255)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대한민국 공공기관
(256)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재정수첩
(257)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조세수첩
(258)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이슈
(259)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 세제 이슈
(260)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이슈
(261)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262)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NABO 生生 주간 경제통계
(263)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통계로 보는 재정이슈
(264)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265)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266)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267)	IV.보고서·발간물>3.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홍보물
(268)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269)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국정감사관련보고서)
(270)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71)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입법·정책보고서)
(272)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73)	①III.주제별 공개>2.의회외교> 7)의회외교관련발간물 ②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 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274)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입법과 정책)
(275)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알림지(홍보책자)
(276)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이슈와 논점)
(277)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기타자료
(278)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입법영향분석보고서)
(279)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280)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NARS 현안분석)
(281)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지표로 보는 이슈)
(282)	IV.보고서·발간물>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알림지(국회입법조사처보)
(283)	IV.보고서·발간물>5.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원 홍보 브로슈어
(284)	IV.보고서·발간물>5.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원 미래생각
(285)	IV.보고서·발간물>5.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원 미래서평
(286)	IV.보고서·발간물>5.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287)	IV.보고서·발간물>5.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88)	IV.보고서·발간물>5.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원 미래칼럼
(289)	IV.보고서·발간물>5.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원 미래세미나
(290)	II. 의정활동별 공개> 2.위원회구성·계류현황등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291)	III.주제별 공개>6.언론·미디어·일정> 5)국회기자회견장사용현황	국회 기자회견장 사용 현황

## [토론]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2023. 12. 15.(금)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5 간담회의실
- 토론: 김장환 기록연구원(국회기록보존소)

---

### 문제 제기

- 공공기록물법 제정(1999년)과 대통령기록물법 제정(2007)  
→ “기록이 없는 나라”에서 “기록이 있는 나라”로
-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으나 참여정부 이후 대통령기록은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
  - 2008년 봉하마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2012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기록물,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논란,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 전직 대통령 열람권 문제 등등
-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 자체가 헌법기관임.  
→ 고로 국회의원이 생산하는 기록은 국회의 핵심 기록
- 그러나, 국회의원 기록관리는 현재 무방비 상태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



## 2013년부터 법제화 시도, 이미 10 년차

- **(2014. 3.)**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로드맵 재정비
    - 2020 년 이전 관련 법규 마련, 2020 년 이후 국회의원기록 이관 추진 목표
  - **(2014. 5.)**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 작성
    - 신계륜 의원실 요청
  - **(2016. 11.)** 이재정 의원실 간담회 개최
    - 국회의원 기록관리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 **(2016. 12.)** 국회도서관법 개정
    - 국회도서관 직무에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신설
  - **(2017. 7.)** 이재정 의원실 법제실 법률안 의뢰
    - 국회도서관 내부 사정으로 답보 상태
  - **(2022. 12.~2023. 3.)** 국회도서관 내 국회도서관법 개정 T/F 구성
    - 국회의원기록물 관련 규정은 미반영
- 

## 그 와중에 국회의원(실)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들

- **(2012~2013)** 제 17 대국회 정봉주 의원실 기록물 일괄 수집(약 2,000 권)
- **(2016)** 국회의원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수집·관리 정책 수립
- **(2016)** 제 19 대국회 교체의원실 기록물 수집 시범사업 추진
  - 20 개 의원실 157 상자, 2,369 점
- **(2020)** 제 20 대국회 교체의원실 기록물 수집
  - 14 개 의원실 약 45 상자

- 그 외, 구술기록 아카이빙 사업(2012~현재)을 기점으로 이종찬, 현경대, 김형오, 문희상, 김종필 전 의원 등의 개인 의정활동기록물 수집
    - 구술채록 → 기록물 기증 → 기증 기록물 전시 → (다른 의원의) 기록물 기증 → (.....)
- 

###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실 기록을 수집한다고 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

- “국회의원기록, 뭐 수집할 게 있나? 중요해?”
    - 네, 중요합니다.
  - “이미 중요한 자료는 다 수집되고 있는 거 아냐?”
    - 구술이 서 말이어도 꺾어야 보배입니다.
- 

### 의원실의 입장은?

- 의원실의 업무 수행 방식은 백인백색 → 국회의원의 관심사에 따라 보좌진의 업무 수행 방식과 산출되는 기록의 성격이 달라짐.  
보좌직원의 현실은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특수한 업무환경에 놓여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인수인계의 부재, 상당 부분 잦은 인원교체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질적, 안정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21 대 국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어느 의원실도 향후

의원실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연희, 2023, 미발표 논문)

- 사용하기 너무 불편한 국회 홈페이지와 시스템 등

최근에 국회 보좌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막상 들으려고 했더니 교육을 듣기 위한 접속 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연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들고,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망 컴퓨터에서는 공인인증서 다운로드가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USB 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하는 인터넷망/업무망 공용 USB 는 고장도 잘 나서, 벌써 절반 가까이 고장난 상황이다. 어쨌든 이렇게 USB 에 공인인증서를 담아서 업무망 컴퓨터에 꽂고, 로그인 허가를 받고, 로그인을 해서 다시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 신청과 수강에 대해 또다시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원가입 역시, 민간 사이트와 다르게 매우 복잡하다. 요새 웹사이트에서는 지번 주소를 치면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입력이 가능한데, 국회 업무망 사이트에서는 칸마다 구, 동, 상세주소를 따로 기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게 의무 교육인데,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잘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화 방안 연구, 2021)

일단 국회 메일은 쓸게 못된다. 국회 메일은 보도자료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일단 대량 전송을 못하고, 오류가 많다. 성능이 나빠서 쓰지 않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화 방안 연구, 2021)

- 비효율적인 의원실 업무 관행

법안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아주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한다. 종이를 법안을 뽑아서, 다른 의원실에 가서 직접 도장을 받으러 간다. 전자시스템이 있어도 쓰지 않는 이유는, 전자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의가 안되게 막아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다보니 구시대적으로 도장을 받으러다니고, 그걸 사무처에 내면 사무처에서 다시 이걸 타이핑해서 시스템에 올린다. 이중으로 일을 하는 셈이고, 도장 받으러 다니는 인턴 비서나 저연차 직원들만 고생하는 셈이다.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화 방안 연구, 2021)

- 국회기록보존소로 넘겨도 정말 괜찮아? A 의원실 보좌관의 우려  
기록이 남겨짐으로써 갖게 되는 위험요소나 리스크 때문에 저 같아도 법제화에 반대할 것 같아요. (.....) 기록이 남겨지고, 기록보존소로 이관됨으로써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철저히 어떻게 비밀이 보장되고, 기록보존소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 행정부에 비해 빈약한 의원실의 인프라. 기록관리가 정말 필요 없을까?  
자료요구를 해서 이미 받은 자료, 기존에 비슷한 주제의 정책질의나, 언론 인터뷰, 민원 처리 등을 진행한 결과가 있지만, 관련 기록이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장연희, 2023, 미발표 논문)

→ “가장 간편한 방법은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거나,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

##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현황 분석틀” 기준에 따른 국회기록관리 현황

- I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
  -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법률정보시스템, 예결산정보시스템,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열린국회정보포털, etc.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이관” 대상임.
  -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작업 중
  - 목록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이관 받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II, IV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

- ex. 정보위원회 회의록 이관 필요
  -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로 미이관  
→ 심지어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은 상태로 관리 중임.
- cf. 비공개회의록 공개 문제: 현재 입법미비 상태로, 비공개회의록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현재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안에 해당 내용 포함하기로 협의하여 개정 작업 진행 중임.
-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 각 국회의원실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정책연구비를 지원(1 인당 500 만 원)받아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국회사무처에서는 각 국회의원실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예산관계철(보존기간 5 년)에 편철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책개발비 관련 기록물철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회사무처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는 국회의원 정책자료의 경우 최종 산출물을 공문과 함께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지원과에서 최종 산출물은 자체 보관하고 지출증빙 관련 문서만 이관하고 있음.

→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본문과 함께 산출물을 이관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이관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다만, 2019 년 이후부터 전자파일로 생산된 정책연구보고서의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

○ cf. 입법회답, 법안의뢰 등에 대한 정보공개 → 결국엔 의원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19-111)  
제 19 대 · 제 20 대 국회 국회의원 조사회답 현황('19. 6. 현재까지) - 의원실별 · 담당자별 현황(목록), 주제(제목) 및 주요내용 포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
- 주문  
피청구인이 2019. 7.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부터 1 년이 지난 조사회답'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 다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조사회답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 이에 1 년 후 회답 내용을 공개하고,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부분공개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답보 상태임.

### • III, V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 정치활동, 지역구 활동, 원내 정당 활동 관련 기록 등등  
→ 대(代)가 종료되는 시점에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열심히 수집 중입니다.
- 정보공개 덕에 남겨지는 기록들
  - 제 20 대국회에서는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이나 토론회 장소를 대여할 때 사무처에 공문 없이 처리함.
  - 제 21 대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사무처에서 공문을 요청하기 시작함.
    -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문 필요

-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견제로 약간의 제도가 생기고, 그에 따른 기록이 남겨지게 됨.

- **VII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

- 국회의원, 소속기관 홈페이지(SNS 포함)
  - ex. 인터넷 아카이브(<https://archive.org/web/>) → 국회도서관 협업 제안  
cf.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portal/webSite/webSite01.do>)
  -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온라인 원격 수집, 웹페이지의 링크를 따라가 그 안에 포함된 텍스트, 이미지 등 수집
  - 웹기록 보존포맷 국제표준(ISO 28500)인 WARC 를 적용한 K-WARC 활용

- **너무나 당연한 대안: 국회기록보존소의 전문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 예컨대, 의원실은 자체적으로 상임위 활동이나 직책에 따른 활동, 지역구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수행함.
- 그러나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의정활동기록물을 담당하는 인력은 1.5 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록관리 컨설팅이나 수집 활동이 쉽지 않음.
- 이는 오롯이 의원실에서 기록관리를 해야 기록이 남겨지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 따라서, 국회기록보존소 내에 의정기록관리과(가칭) 신설을 통해 국회의원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함.
- 더불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 등은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예산 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함.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차원에서 벗어나 기록관리를 통해 의원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 어쨌든 국회의원 기록관리를 위한 제도화는 필요하다

-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 국회기록물을 국회의원, 소속기관, 정당 등이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로 규정함(안 제 2 조).
-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기록물 생산기관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회기록물 생산기관은 기록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또는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음(안 제 8 조).
- 「국회법」 제 118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른 비공개회의록 등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 년이 경과하면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의록등의공표심의회를 구성·운영함(안 제 21 조).
- 국회의장단 및 그 보좌기관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기관 기록물과 분리하여 국회의장단 기록물로 수집하고, 국회의장단과 관련된 개인 및 민간기록물도 수집하여 국회의장단 기록물이 통합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 24 조 내지 안 제 25 조)
- 국회의원 및 정당의 대표자는 국회기록물에 대하여 12 년의 범위 이내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20 년의 범위 이내로 함(안 제 26 조).

→ **법제화, 그리고 법제화 이후에도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요소**

- 의무사항 최소화
- 내용의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 대책



#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관점의 전환

박태선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은 공적(official, common 등) 기록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증거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치 갈등을 조정 및 해소하고, 주변화된 의제와 주체의 소외를 방지하는 권력을 형성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접근, 수집 및 관리, 보존과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함. 이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수집을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임.

## □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정치영역 아카이브(Archives)의 대표기관'으로

○ 현실 정치는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임. '정치'와 '정치적인 것'이라는 언어는 부정적 프레임에 갇히고, 정당 정치와 의회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시민의 저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정치적 이념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고, 국회의 대표성 위기 즉, 국회(정치)로부터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드러나고 있음.

○ 한편, 디지털 사회로 전환은 정치 여론의 생산과 수용 방식을 바꿨음.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정보를 습득하는 방식과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치인의 활동 무대가 거대해지고 있으며, 이는 토론회, 회의, 기자회견, 언론 브리핑, 홍보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서 '기록'이, '기록보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아카이브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설명책임성을 획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 "시민들의 국회 신뢰와 정치의식,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아카이브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비슷한 듯 또 필요해 보이지만, 결국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아카이브 즉, 국회의원 기록 수집의 목적과 실질적 방안과 전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앞서 서술한 “아카이브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설명책임성을 획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연구」에서 제시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개념을 정립하고, 기준과 범위, 기능,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수집, 관리, 보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

○ 반면, “시민들의 국회 신뢰와 정치의식,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아카이브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우,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 ‘정치적 기능’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정치 신뢰와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인식, 가치의 관점을 전환하게 됨. 기록의 수집, 관리, 보존 외에도 △정치영역 기록의 기록화 △정치적 공론장으로써 아카이브 △정치적 공유지로써의 아카이브 △관점주의적 완충작용의 장으로서 아카이브 등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교류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시민들의 신뢰, 의식,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연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와 구조를 설계하게 될 것임.

○ 통 연구에서 제시한 관점은 국민의 알권리, 정치인의 투명성, 설명 책임성 등에 전반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존에 진행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원 기록 수집에 관한 연구와도 비슷함. 국회의원의 기록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인식 지평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비공개 정보의 능동적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 경우 현재 다수의 기록이 비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공개 기록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함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 이에 관한 사례로 국회의원 징계 심의회기록을 들고 있으며, 이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 하지만,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정치영역에 대한 이해로부터 기록 담론의 적용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영역’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지에 따라 패러다임에 따른 국회에서의 아카이브 존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기록 수집, 관리, 보존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정치영역에서 국회와 정당은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

로써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만듦. 이를 위해 시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정의해 가야 함. 이는 정치가 중요한 이유임. 이러한 관계론적 토대를 간과한 기록보존소 운영은 아카이브로부터 정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됨. 남겨진 기록을 잘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을 통한 정치, 사회의 형성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함.

○ 국회기록보존소의 필요성과 역할이 민주주의에 대한 통시적 인식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뿐만 아니라 공시적 인식과 가치를 확장하는 데까지 역할과 범위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의견임.

○ ‘국회기록물법 제정 → 국회기록법 제정’, ‘국회기록관 → 국회기록원’ 으로 인식과 가치의 확장이 필요함. 국회 기록에 관한 관념은 ‘물리적 요인’이 아닌 ‘논리적 요인’이 작용되어야 함. 특히, 웹 기반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 보존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할 것임.

#### □ 법리적 차원에서의 ‘국회기록법’ 이해

○ 동 연구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국회는 헌법에 제시된 헌법기관이며, 헌법 제41조에 따르면 헌법기관인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됨.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 1인이 각각의 헌법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음. 연구에서 설명한 대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를 구성하는 실질적 주체인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조직의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 관리,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300인의 국회의원의 기록을 수집, 관리, 보존하는 데 있어 ‘국회기록법’ 제정이 필요함.

- 이는 독립된 형태의 기관으로서 국회기록원 설립과 이 기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를 뜻함.

○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회의 ‘기록관’을 설치하거나 운영의 필요성 및 ‘국회기록물법’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회기록물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는’ 법이 아닌,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상위법, 특별법 형태로 입안되어야 하며, 동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공

공기록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함.

(예시)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따른 국회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 및 물품을 말한다.

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나. 가목을 보좌하거나 자문하는 기관

다. 운영에 필요한 산하기관

○ 현재 '공공기록물법' 제10조에 따라, 국회가 지정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이며, 국회도서관에서 국회기록물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제상 기구는 '국가기록보존소'임. 이에 국회의원 기록 수집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진전이 어려운 이유로 △국회도서관장이 '국회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정무직으로 임용되며, 관례적으로 제1 야당의 추천을 통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점 △의원입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더불어 국회의장 직속으로 「정치(국회의원 등)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록 혁신 방안 연구(안)」 관련 연구 용역 실시, 전문가 협의체 구성, 공청회 및 토론회, 의원입법 순으로 진행되는 방안 고려할 필요

○ 특히, 의원입법의 의미가 높음.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행해지는 입법행위 또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법률을 말함. 의원입법이 가능한 주체는 국회의원과 위원회가 있으며, 국회의원은 헌법 제40에 근거,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이 제출하는 의원입법은 국회법 제51조에 근거함. 이유는 의원입법 발의 요건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동의)가 있어야 의안 발의가 가능하므로 이미 의원 발의 요건에서 Archives의 당사자이자 Archiving의 대상자인 국회의원 다수를 설득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인식

○ 첫 번째로, 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 수집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자체에 대한 정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연구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법 및 법률, 규칙 등에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 바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 국회의원 활동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된 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국가재정 투입의 범위를 국회의원 개인의 보수, 의원실 운영을 위한 보좌진 급여,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한 경비 지원, 국회의원에게 모이는 자발적 후원금 등 국가재정 투입 범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한 의정 활동 영역의 범위와 이에 따라 생산된 기록 수집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회의원이 모금한 자발적 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운영함에 있으나, 이를 국가재정이라는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법리적, 규범적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로, ‘국회의원 개인 정치(지역구)활동’ 기록에 관한 사안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사적(개인)영역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의정활동<sup>1)</sup>’이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에 관한 활동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법률안 입안, 정책 개발, 국회 상임위 등 운영 및 활동, 각종 연구단체 활동 등이 있으며, 지역구 활동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국정 운영 및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의원은 개인 또는 개인의 가정과 관련된 활동 등을 사적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대부분 공적영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을 구분할 때 국회의원 임기 내 반복되는 의정 활동, 선거 활동으로 구분하고,

○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지역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원 자격으로 지역구 행사 참여 정보, 의정활동 보고회, 지역구 소속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관련 활동 등에 대해 의원실에서 등록, 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지역구 활동 관련 정보 대부분이 임기 종료 이후 소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다만, 이 경우 의원(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제2조(정의) “의정활동”이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권한 및 책무에 따라 행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말함

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 □ 현실적 문제: 의원실 업무 관련

○ 본 연구에서는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의원 개인 정치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까지 등록·관리 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별 국회의원(실)에서는 의원 활동 홍보를 위해 '의원 개인 정치활동'에 관하여 기록화뿐만 아니라 이를 선별-정리-보존-활용까지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의원 임기 중 또는 만료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영구히'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 기록 소멸의 사유로 직무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름.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 하거나 상실되게 됨. 상실되는 경우 의원(실)은 의정활동 기록을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 임기 만료 전 기록을 정리,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둘째는 의원(실) 특성상 생산, 공개된 기록의 책임자는 국회의원이며, 문서, 사진 등의 기록을 실질적으로 생산한 생산자는 보좌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으며, 면직되는 경우 대체로 인수, 인계 혹은 기록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많은 기록이 소멸되고 있음.

○ 의원실 업무는 크게 정무/정책/홍보/회계(행정)/지역/수행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이 중 의원실에 따라 인력 배치, 업무 분장 내용은 모두 다름. 보좌진 각 개인이 생산하는 기록 또한 업무에 따르며,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 등을 관장하는 담당자는 대체로 정책 또는 홍보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보좌진이 맡게 됨.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의원 기록 수집을 위한 전략은 보좌진 업무 기능에 맞춰 세울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좌진의 업무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며, 한 보좌진이 담당하는 업무 양은 적은 편이 아님. 이에 기록관의 처리과와 같은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회 기록을 관장하는 확장된 기관(국회 기록원 형태)이 설립되게 되면 △전산 시스템상에서 안정적인 고품질 클라우드 서비스를 각 의원실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임기 중 기록을 저장,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의원(실) 모니터링 및 수집,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록물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를 의원실에 배치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독일 정당 아카이브(Stiftung Archiv) 사례 참고

○ 독일의 경우 정당 산하 재단이 운영하는 아카이브의 목적, 본질은 정치인의 기록보존과 활용을 통해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아카이브를 통한 시민의 정치의식 향상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독일 정당 산하 재단은 전적으로 연방 세금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있으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장학금 등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음. 독일의 모든 정당에는 아카이브가 있으며, 이러한 정당은 각 정당 산하 재단에 아카이브 관리를 위탁함. 그리고 정치인은 정계 은퇴 자신의 기록을 비공개로 아카이브에 기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로 사회민주주의정당 아카이브(AdsD), 빌리브란트 아카이브(WBA) 등이 설립,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정당 아카이브에 대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의 주체인 시민이 정당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의지, 이념, 그리고 정당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진전되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정당의 기록, 아카이브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당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정당 아카이브임에도 연방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정치 교육의 시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확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아카이브가 객관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개입시킴. 이러한 정치 아카이브에서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아카이브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개입함.

○ 이러한 점에서 필자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자가 가장 '정치적'이라고 주장함.

## □ 마무리

○ 이상의 근거와 서술을 토대로 국회 기록관리 정책은 국회 각 기관을 총괄할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관으로 재출발해야 하며, 국회의원(실)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하기 위해 국회의원(실) 기록은 '행정기록'이 아닌 '민의를 모인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 조정, 합의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기록이 국회의원(실)에 축적되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설명한 국회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등에 매우 공감하는 바임.

○ 이후에는 정당 기록 수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의회 기록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등이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토론회 토론문

2023. 12. 1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 발제자가 제안하는 (1)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보존 기준의 전환, (2) 국회기록물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국회기록관 설치, (3)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프로세스와 가이드 마련 등에 동의하며, 이러한 의정활동기록의 관리와 공개가 시민과 유권자의 권리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 1. 의정활동기록의 관리와 공개, 시민 권리 향상의 측면에서

### 1)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시민으로서

-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토대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이 권력을 행사해야 함.
- 300명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과 권력 앞에 시민이 대등하게 서있으려면, 시민은 국회의원이 어디에서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
- ‘그 국회의원이 어느 날,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파악이 되어야만 ‘그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개인이 가진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는 않는가’ 등의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평가가 시민 사이에서 보다 회자되고 확산될 때 감시 받는 권력은 감시하는 권력을 의식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이전에 감시, 감시 이전에 정보의 공개가 중요함. 국회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의정활동정보는 명확한 법률을 토대로 이해되고, 수집되고,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함.

- 의정활동기록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보다 많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감시받는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시민의 제대로 감시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임.

## 2) 선거시기 후보자를 감시하는 유권자로서

-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 받는 자임. 이 말인 즉슨, 재임이나 연임을 위해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의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더 나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도 후보자의 과거 의정활동기록을 수집,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는 특정 사안에 대한 발언 한 마디, 태도가 드러나는 한 장의 사진, 자질을 대표하는 사건 하나로만 할 수 없음.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 행위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함.
- 매일 쏟아지는 기사와 파편화된 의정활동기록만으로는 유권자가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움. 오히려 편협한 이해로 단단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
- 거꾸로 말하면, 국회의원 개인으로서의 의정활동기록의 공개 범위가 넓어졌을 때 시민으로부터 보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임. 맥락 없이 편집된 장면으로 오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록, 관리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의정활동기록을 통해 유권자에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 소명, 해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 의정활동기록의 정보 접근성의 측면에서

- 이렇듯 임기 중과 선거 시기 의정활동기록의 공개 및 확대가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 그 기록의 접근권이 향상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

- 접근권이라고 한다면 의정활동기록을 언제부터 열람이 가능한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어떤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지, 다운로드나 변형이 가능한지 등
- 국회의 선제적인 정보공개와 ‘열린국회정보’ 포털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적인 시민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함.
- 현재 국회는 수십 개에 이르는 유관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그 정보가 어디있는지 알고 있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이는 국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시민에게는 ‘내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어렵게함으로써 국회가 수행하는 업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게끔 만듦.
- 그러므로 공개하기로 한 의정활동기록은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당장은 ‘열린국회정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법하지만, 현재도 1천 건 이상의 데이터를 다운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량의 데이터를 누적, 비교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 또한, 의정활동의 발자국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경우 그 내역과 보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발제문 9페이지에서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 의원은 선물내역, 상시 재정지출내역, 법적 비용 지출 관련 내역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한 것과 같이 의정활동기록에 정치자금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치자금의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방대한 숫자를 효율적으로 점검, 비교,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편집이 가능한 파일의 형태로 공개해야 할 것임.

### 3. 현행 법 제도와 국회(의원)이라는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 1) 의정활동과 연관된 유관 법률의 제개정 필요

- 단순히 국회기록물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기록관 설치를 넘어, 타 법률에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거나, 공개 여부와 그 해석을 국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자의적으로 맡기고 있는 등의 조항의 제개정이 필요함.
- 물론, 공개와 관리, 수단, 기간 등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통합적 제개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테면 정치자금법상 공개되고 있는 정당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전체가 아닌 선거비용에 한해서, 그것도 열람만 가능하게끔 한다거나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해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로 정의하며 공개 대상인 국회에 스스로 공개 여부를 맡기는 등의 아이러니를 방지해야 함.

## 2) 반복되는 정보공개 거부, 국회 스스로 인식을 전환해야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제자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국회 스스로의 인식과 규범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임.
- 특히,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으로서 공익성을 띠는 기록이라 여겨질 수 있는 사안에도 사회적 현안이 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의 각 호를 근거로 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함.
- 이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의 주체가 의정활동기록이 가지는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법률과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으로서 본인의 의정활동기록이 절차에 따라 보존, 공개(비공개되더라도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기록, 의무 제출해야 하는 것까지가 본인의 책무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애초부터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한 것임.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사한 의정활동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한)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국회기록물에 대한 수많은 연구, 토론이 있었던만큼 당장 21대 국회에서는 어렵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람.

# 데이터 기자가 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

이종호 오마이뉴스 데이터저널리즘 기자

기자가 국회 데이터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평가△비교△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

##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은 지도없는 보물섬

- 열린국회정보 포털 등에는 의안정보시스템부터 SI의정분석서비스까지 많은 정보.
-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자들은 오히려 도대체 뭘 찾아봐야할지 더 어려움

## 국회의원 페이지는 ‘실없는 구슬’

- 의원별 페이지는 기존 분산되어 있던 정보들을 의원 중심으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많이 개선. 과거엔 의원이 사퇴하거나 임기가 끝나면 헌정회에서 기본 정보만 검색할 수 있었으나, 18대 국회의원부터는 ‘역대 국회의원 통합 현황’에서 검색 가능.
- 하지만 출석률, 상임위 소위 회의록 등 보완 필요.
- 의원 한명 한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의원별 비교는 여전히 어려움. OpenAP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기자나 시민들은 어려움. API 공개는 높이 평가하지만, 접근성에서 쉬운 방법 모색해야.

## 의원실이 피감기관에서 받은 자료는 목록 및 원문 공개 필요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감시하기 위해선 피감기관에서 받은 문서 목록(가능하면 원문까지) 공개 필요. 피감기관인 행정부처의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목록에는 ‘국회 000 의원 요구자료 제출’로 의원실에서 요청-공개한 자료 목록이 일부 나옴. 하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지 알 수 없음.
- 피감기관에 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 가능 자료라고 할지라도 다시 시간과 행정인력이 소요됨.

### 정치자금 보고서, 선관위 신고 후 국회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형태로 함께 공개해야

- 국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API에 등록된 2022년 의정보고서를 올린 의원은 총 10명. 하지만 정치자금으로 의정보고서에 비용을 100만원 이상 지출한 의원은 총 88명. (평균 1109만원)
- 문자발송비용을 지출한 의원은 총 270명(평균 510만원 총 51억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음.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국회의원 활동의 중요한 기록. 선관위 신고 후인 매해 3월 데이터 형태로 국회 의원별 페이지에 함께 공개해야 함.

### 의원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 필요

- 의정활동 기록 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참여 정도를 지수화하고, 당에서 공천 점수나 의원평가로 포함하는 등의 유인책 필요.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기록 제도는 정치인 검증의 전환점이 될 것

- 정치인 검증 보도에 한 획을 그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처럼 의정활동기록 제도도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더 촘촘한 시스템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기록할 때, 국회의원들도 좀 더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